

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(대안)

검 토 보 고

I. 주요내용

- 제명을 「자원봉사기본법」으로 하고, ‘자원봉사활동’을 ‘자원봉사’로 함(안 제명 및 제1조 등).
- 기본계획 수립시 시·도지사와의 협의하도록 하고, 지방자치단체에 지역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함(안 제10조 및 제11조).
- 자원봉사센터의 직접운영을 폐지하고 국가가 자원봉사센터의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며, 자원봉사센터의 기부금품 접수를 허용함(안 제22조 및 제24조).
- 행정안전부장관의 자원봉사관리시스템 구축·운영 및 자원봉사현황 통계 작성·제공 근거를 마련함(안 제25조 및 제26조).

II. 검토의견

1. 자원봉사관리시스템 관련 협조 의무 규정 추가(안 제25조제2항)

- 안 제25조제2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자원봉사관리시스템을 구축·운영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 관련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자원봉사관리 시스템과 관련 기관에서 운영하는 자원봉사 관련 전자정보시스템의

연계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.

- 한편, 안 제26조제2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자원봉사현황 통계 작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 관련 기관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면서,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음.
- 따라서 안 제25조제2항에도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이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르도록 규정함으로써 안 제26조제2항과의 정합성을 확보하고 법 체계상 균형을 유지할 필요가 있어 보임.
- 이에 안 제25조제2항 후단에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이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르도록 하는 수정의견을 행정안전부와 협의하여 마련함.

< 안 제25조제2항에 대한 수정의견 >

개 정 안	수 정 의 견
제25조(자원봉사관리시스템의 구축·운영)	제25조(자원봉사관리시스템의 구축·운영)
① (생략)	① (개정안과 같음)
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자원봉사관리시스템을 구축·운영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 관련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자원봉사관리시스템과 관련 기관에서 운영하는 자원봉사 관련 전자정보시스템의 연계를 요청할 수 있다.	②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,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.
③ (생략)	③ (개정안과 같음)

○ 그 밖에 개정안의 체계 및 자구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법문언을 명확히 하기 위해 일부 경미한 자구 수정이 필요하다고 보이며 자세한 수정사항은 주서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(전문위원 최 기 도)